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확대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98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확대 ····· 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확대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정원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1]에 따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각각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 략) <신 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30명----------. ④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1)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현 행	개 정 안
⑤ ~ ⑨ (생 략)	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제10조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삶의질위원회는 농어업인·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임.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고 있고, 위촉직 위원은 ① 농어업인, ②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③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함.

현재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 또는 균형발전 등 지역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구분	세부내용
목적	□ 농어업 및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구성	□ 총 25인 이내 ㅇ **위원장**: 국무총리 ㅇ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 미제정 ㅇ **위촉직 위원**: 아래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① 농어업인 ②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 ③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심의 사항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ㅇ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ㅇ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ㅇ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ㅇ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인구·환경문제 등 국가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국가정책을 논의·수립하는 정부위원회 중 지방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은 2024년말 기준 10.8%(총 571개 정부위원회 중 62개)[2]로 낮은 상황임.

2)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법제처, 2025. 10.)

이에 법제처는 2024년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운영하여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지방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였으며, 본 개정안을 포함한 20개 법률안이 2025년 12월까지 국회에 발의되었음(참고자료1 참조).[3)]

개정안은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개발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에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 정원을 5인 증원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1인 증원(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2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 관련 위원 4인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중 정부위원회에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3건 발의되어 있는데, 각각 체계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건의 개정안은 “삶의질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를 참여시키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동일하나, 각각 위원의 추천자 및 추천대상, 지역 관련 위

3)「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12.16.)

원의 참여가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정부위원회에 지역참여 확대 법률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윤준병의원, 221489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2214900)	「동물보호법」 (윤준병의원, 2214892)
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추천자	○ 시도지사협의회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도지사협의회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시도지사협의회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대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촉 의무	×	○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농특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4개가 모두 각각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반면 다른 2개 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2개에서만 추천하도록 하였고.

또한, ② 농특위는 위촉직 위원으로 추천하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으로 규정하나, 다른 2개 위원회는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③ 농특위만 지역 관련 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2개 위원회는 이를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지방 관계 위원의 참여 체계의 차이는 위원회에 지역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을수록, 지역 관련 위원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질위원회와 농특위는 ①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는 점, ② 공통적으로 당연직위원에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 ③ 두 위원회는 장기적 정책 추진과 지속성을 위하여 통합방안이 논의[4]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간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지역 참여 체계를 다르게 규정한다면 지역의 의견을 일관적·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삶의질위 및 농특위 비교]

구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목적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협의 및 대통령 자문
소속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위원 정원	25명 이내	30명 이내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4)「농특위, 농어업인삶의질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농어업농어촌특별위, 2023)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5]

문 의 처
02)6788-5417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고 1 국회 발의 법률안 목록

*자료: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12.16.)

※ 법률안 소관 상임위(직제순)

연번	소관 상임위 (소관 부처)	법률 (대상 조문)	주요 내용	대표 발의의원 (의안번호)
1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제3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정태호의원 (2215068)
2	행정안전 위원회 (소방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제3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건영의원 (2214497)
3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900)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제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8)
5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2)
6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제3항)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3)
7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윤준병의원 (2214897)
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3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7)
9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제3항·제4항)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원이의원 (2214424)

1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70)
1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이학영의원 (2214814)
12		환경보건법 (제10조제3항)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박정의원 (2214982)
13		에너지법 (제9조제5항)	에너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주영의원 (2214769)
14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제13조제3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3)
15		국토기본법 (제27조제3항)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0)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4)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6조제3항)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6)
18		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제2항)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7)
19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복기왕의원 (2214582)
20	성평등가족 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1)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제4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50)
2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제4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	김한규의원 (2215248)